

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5인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
2.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

1. 위원장은 제 1항제 1호의 5인중에서 선임
2. 부위원장은 제 1항제 2호의 4인중에서 선임

③ 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 3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
1. 법 제 10조제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2. 법 제 8조제 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
3. 법 제 17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
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

1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
공직자에 관한 사항

2.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제 4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
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
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
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③ 제 2조제 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증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
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조 (위원회의 회의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0이상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
1. 법 제 8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 8조제 11항의 규정에 의한
조사의뢰의 승인
2. 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
3.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4. 법 제 23조 내지 법 제 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